

글 _ 김윤희(공인노무사)



계약직 직원의 연차수당 & 퇴직연금제

벤처기업 인사 · 노무 ● & A 시리즈 12

1년 근무 전제돼야 연차휴가 발생

Q | 1년 단위 계약직으로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마지막 갱신년도에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의 8할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근로계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동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가산연차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2단위 계속근로 전제 시 가산휴가 역시 부여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 근무를 조건으로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점에서 1년간의 근무조건(근로관계 유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8할 이상 출근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1년간 개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 1999.7.15, 근기 68207-1667).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선택 가능

Q | 요즘 퇴직연금제가 새로 도입되었다는데 정확히 무슨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퇴직연금제란 사업주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뒤 해당 근로자가 55세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주의 부담률(근로자의 연금급여액)은 현행 수준의 50% 이상 100% 이내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과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의 두 가지가 있으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선택하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일시금의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라 운용되는 이 유형은, 최종적으로는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도산 등 사실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매년 의무적으로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놓음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현황을 통지해 가입자들이 운용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확정기여형을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와 함께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년 1/12만큼 100% 사외적립'이라는 점에서 연금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기여금만 납입하면 경직적인 퇴직금제도 관리 부담에서 면제될 뿐 아니라 노무관리의 유연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가입자가 퇴직한 때는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